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단기보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2014. 9. 19. 개정)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50%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시설종류		
	시설장 성명	(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급여범위) 단기보호급여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보호 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 ① 단기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② 단기보호급여 기간은 월 15일 이내로 한다.
-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시설 설비 등) 등이 있는 경우

제5조(계약자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이용료 납부의무
 - 2. 단기보호급여 범위내 급여 이용
 -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단기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단기보호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 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 6. '갑'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 ③ '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제3조의 단기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4조제2항의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외출 및 외박은 '갑'의 건강을 고려하여 24시간 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외출 및 외박시 동행자가 '병'이 아닐 경우 '을'은 '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행자의 연락처 및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 ④ '병'은 외출 및 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 ① 단기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단기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로 ○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 3. 단기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 ① '갑'은 단기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 ① '을'은 '갑'(또는 '병')이 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급여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병'에게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④ '을'이 단기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을'은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6조(식사 및 간식)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갑'(또는 '병')의 동의를 얻어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 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제17조(침실의 배정) '갑'의 침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 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갑'(또는 '병')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을'이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다.
- 제19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배상책임)

-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4.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1조(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대리인(보호자) (인)

단기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00.00.00)

○ 단기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분 류	금액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 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지격전환자(화귀난치성, 만성 질환자)	7.5%
저 소 득 층 (본인일부부담금 감령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지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시설급여 일반원칙
 - 1.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2.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 3.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2000.00.00)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2) 이·미용비: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 (1)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 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2) 각종 프로그램 비용: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획서

○ 성 명:

0 주 소:

○ 급여종류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0000년 0월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이용여부	일자	이용여부	일자	이용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31	

※ 기타:

※ 예) 이용(○), 미이용(×)

년 월 일

이 용 자: (인)

장기요양기관: (인)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 □ 안내)서
 ○ 성 명: ○ 주 소: ○ 계약기간: ○ 이용기간: ○ 급여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기요양급여(□이용 □제공)을 종결신청(안내) 합니다.
- 아 래 -
1. 종결사유 □ 타기관이용 □ 타서비스이용 □ 등급변동 □ 장기입원 □ 사망 □ 계약기간종료 □ 기타()
2. 종결일자 :
년 월 일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장 (인)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

○ 성 명:

○ 주 소:

○ 계약기간 :

○ 이용기간 :

○ 급여종류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0000년 0월 장기요양급여 이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요양보험		소 계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			
	소 계			
개 인	요양급여비용(○○%)			
부담비용	비급여	재가급여 월한도액		
		초과금액		

※ 본 세부내역은 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장 (인)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 성 명: ○ 주 소: ○ 이용기간: ○ 급여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0000년 00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납부획 서를 발급합니다.	인
1. 납부일자 :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장 (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1. 수집대상정보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이 용 자 : (인)